

사회기반시설·개발사업·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

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(☎ 044-201-3778)

▶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 수단이 미흡하여 획일적, 위압적 경관을 형성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, 상당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 심의자문을 실시중이나, 심의대상·검토내용 등이 제각기 달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,
 -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·철도·하천 등 사회기반시설,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,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성남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디자인을 창의적으로!

<경관심의 제도 도입 주요내용>

▶ 추진배경 : 사회기반시설·개발사업·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

▶ 주요내용

① 심의대상 및 심의시기 규정

구 분	심의대상	심의시기
SOC	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, 철도, 300억원 이상 하천 등	기본설계(안) 확정 전
개발사업	대지면적 3만㎡이상 도시개발, 택지개발, 주택건설·정비사업 등	개발계획 확정·승인 전
건축물	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	건축 인허가 전

② 심의기구

- 중앙정부 추진·승인 사업 : 국토부가 구성한 경관위원회
- 지자체 추진·승인 사업 : 해당 지자체가 구성한 경관위원회

③ 사업자의 부담 최소화 방안

- 도시계획위원회(개발사업), 건축위원회(건축물) 등과 공동심의
-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등

▶ 시행일 : 2014.2.